

	<h2 style="margin: 0;">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규칙</h2>		규정번호	3-4-20	
			제정일자	2012. 12. 21	
	개정일자		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1	

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한 안정적이고 활기찬 대학생 활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학생의 정의 및 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정의) 다문화가족학생은 부·모 중에 한사람 이상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귀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부서의 구성)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동양미래대학교 학생서비스센터 내에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담당자를 둔다.

제4조(기능) 다문화가족학생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지원
2. 다문화가족학생의 편의시설 지원
3. 다문화가족학생의 학사 및 진로, 생활상담 지원
4. 다문화의 이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
5. 다문화가족 학생의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

제5조(회의) 다문화가족학생의 지원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총장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